

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28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(증 1,625백만원) 및 보조금 반환수입 33백만원, 기타 이자수입 519천원을 수입계획에 신규반영하고자 함

나.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(증 1,018백만원) 및 신규사업을(① 해외도시 물품나눔 사업 50백만원, ②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250백만원) 편성하고자 함.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

○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'25년 당초 계획(A)	'25년 1차 변경	'25년 2차 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합 계	6,252,894	6,252,894	7,911,176	1,658,282 (26.52%)
216 이자수입	216,487	216,487	217,006	519 (0.24%)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216,487	216,487	216,487	-
216-03 기타이자수입	-	-	519	519
223 보조금반환수입	-	-	32,848	32,848
223-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-	-	8,474	8,474
223-03 위탁비반환수입	-	-	24,374	24,374
714 예치금 회수	1,472,185	1,472,185	3,097,100	1,624,915 (110.37%)
714-01 예치금회수	1,472,185	1,472,185	3,097,100	1,624,915
721 전입금	4,564,222	4,564,222	4,564,222	-
721-03 기타회계전입금	4,564,222	4,564,222	4,564,222	-

○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(정책/단위/세부)	'25년 당초 계획(A)	1차 변경	2차 변경 (B)	증감(B-A) (증감률)
합 계	6,252,894	6,252,894	7,911,176	1,658,282 (26.52%)
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	4,541,834	4,881,834	5,181,834	640,000 (14.09%)
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	2,618,334	2,818,334	2,818,334	200,000 (7.64%)
시책사업과대정	967,360	947,126	947,126	△20,234
공조청무연원수	426,522	426,522	426,522	-
도초시청철교도육	68,525	68,525	68,525	-
시책고립위과대정	290,777	311,011	311,011	20,234
유학생유치	865,150	905,150	905,150	40,000
서네트워킹프로모션	-	160,000	160,000	160,000
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	1,523,500	1,663,500	1,963,500	440,000 (28.88%)
소인프라연구전축	152,500	152,500	152,500	-
서책올림O D A지	800,000	940,000	940,000	140,000
민간국제개발협력	571,000	571,000	571,000	-
해물외품도나시눔	-	-	50,000	50,000
스국마트발시험티력	-	-	250,000	250,000
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	400,000	400,000	400,000	-
재해구호	400,000	400,000	400,000	-
행정운영경비(기본경비)	5,000	5,000	5,000	-
재무활동(예치금)	1,706,060	1,366,060	2,724,342	1,018,282 (59.67%)

※ 1차 지출계획 변경 : 정책사업비(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) 340백만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오세희 (☎ 2133-5278)